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68
----------	-------

제안연월일 : 2026. 7.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93	엄태영의원 등 10인	'26.1.22.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4.01.)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75	손명수의원 등 10인	'26.4.14.	상정	※ 소위원회 직접회부('26.4.20.)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21.)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

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개선”을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u>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u>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u>시범운행지구</u> ----- ----- ----- ----- ----- ----- ----- ----- ----- -----.
<u><신 설></u>	④ <u>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u>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
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
회-----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개선</u>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지방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개선</u>-----. ④ (현행과 같음)
---	---